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[별지 제31호서식] <개정 2014.8.6>

의지·보조기제조업 [ ] 개설 [ ] 변경 통보서

업 소	명칭		개설일
	소재지		(전화번호:)
개설자	성명	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		(전화번호:)
시설개요	시설총규모 ㎡	상담실 ㎡	체형실 ㎡
	작업실 ㎡	기타 ㎡	장비 종
	상시종사자수 명	의지·보조기기사수	명
기 사 인적사항	성명		생년월일
	자격증번호		자격취득일
	성명		생년월일
	자격증번호		자격취득일
	성명		생년월일
	자격증번호		자격취득일
변경내역			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(제54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지·보조기제조업 개설(변경)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개설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(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제조·수리를 담당할 의지·보조기 기사자격증 사본 1부(개설 또는 의지·보조기 기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(변경통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